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가합515062(본소), 2021가합521364(반소) 판결
[물품대금 · 손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윤현철, 이성은, 홍규민, 선우인

변론 종결2022. 11. 25.

판결 선고2023. 2.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5,1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2023.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원고(반소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품에 관하여 2020. 5. 19.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을 1,335,11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35,1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1) 예비적 반소 :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2)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ESS 배터리의 거래구조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LED 조명기구 및 일반 조명기구 부품·완제품의 제조, 판매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장치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Energy Storage System) 배터리' 보관창고를 운영하면서 원고 등과 같은 유통업체로부터 ESS 배터리를 공급받아 태양광발전소에 설치·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3) C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와 ESS 배터리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ESS 배터리의 발주를 하면, 원고는 D 주식회사와 ESS 배터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ESS 배터리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ESS 배터리를 납품받는데, 이때 납품은 C의 배터리 보관창고로 직접 이루어진다. C는 위와 같이 보관창고에 납품된 ESS 배터리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 및 시공한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반품

- 1) C는 ① 2019. 1. 24. 'F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인 G와 E에서 제조한 배터리 용량 1,369kWh3)의 ESS 배터리(BCP4) 포함, 이하 '이 사건 제1 배터리'라고 한다)에 관한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그 무렵 'H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인 주식회사 I과 E에서 제조한 배터리 용량 3,013kWh의 ESS 배터리(BCP 포함, 이하 '이 사건 제2 배터리'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배터리와 합쳐서 '이 사건 배터리'라고 한다)에 관한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2019. 7. 25. C와 사이에 이 사건 배터리를 포함하여 ESS 배터리 28,073kWh를 총 8,941,084,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납품받은 ESS 배터리를 C에 공급하고 2019. 7. 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제1 배터리의 공급가액은 442,999,700원, 이 사건 제2 배터리의 공급가액은 954,776,900원이었다.
- 3)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가 C에 공급한 ESS 배터리 중 이 사건 배터리를 비롯한 일부 배터리가 태양광발전소의 공사 지연 등의 사정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C로부터 2019. 12. 2. 이 사건 제1 배터리를, 2019. 12. 26. 이 사건 제2 배터리를 각 반품 처리한 후,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C에 발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피고와 C 사이의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J5) '와 그 관련 부속품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2019. 11. 11.자 구매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제2조(매매대상)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매매목적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상세한 내역 및 도면은 발주서 또는 개별 계약서에 표기하기로 한다.

1. J

2. 이에 따르는 관련 부속품 등

제3조(매매대금)

1. 매매대금은 피고가 주문하는 제품의 종류, 용량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매매대금은 피고의 발주서 또는 개별계약서(이하 '개별계약'이라고만 한다)에 표기하기로 하며,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입금하도록 한다.

2. 피고는 매매대금을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제4조에 따른 제품의 검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도록 한다. 최종 소비자인 발전사업자의 사업 진행 형편상 불가피하게 대금의 지급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지급기한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가 성실히 협의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조정하도록 한다.

3. 만일 위 일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검수)

피고는 공급받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발견 가능한 품질상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늦어도 10영업일 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일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인지한 하자 또는 수량 부족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5조(납품)

1. 피고는 개별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물품의 공급을 요청함에 있어 납품절차를 명시하고, 원고는 명시된 납품절차에 따라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한다. 만약 개별계약에 납품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고와 피고가 납품절차를 별도 협의한다.

제6조(위험부담 및 소유권 이전)

2. 본 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은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배터리를 423,423,000원에, 이 사건 제2 배터리를 911,691,000원에 각 공급하기로 하는 2019. 11. 28.자 개별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기본계약과 합쳐서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2019. 12. 26. 피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제1 배터리와 이 사건 제2 배터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되었으나, 형식이 동일하므로 편의상 한꺼번에 기재한다).

	이 사건 제1 배터리	이 사건 제2 배터리
3. 계약물품	ESS BATTERY 물품공급(1,369kWh)	ESS BATTERY 물품공급(3,013kWh)
5. 공급장소	F 태양광발전소	H 태양광발전소
6. 계약금액	공급가액 384,930,000원부가세액 38,493,000원총액 423,423,000원	공급가액 828,810,000원부가세액 82,881,000원총액 911,691,000원
7. 지급조건	계약금액 100%지급방법 : 현금결제지급기일 :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내	
8. 기타	계약물품의 인도일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C에 이 사건 배터리를 총 1,383,316,000원(= 이 사건 제1 배터리 438,482,000원 + 이 사건 제2 배터리 944,834,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9. 11. 27.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19. 12. 27. C에 위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C와 원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배터리를 총 1,481,671,301원(= 이 사건 제1 배터리 469,756,490.5원 + 이 사건 제2 배터리 1,011,914,810.5원)에 공급받되, 그 물품대금은 원고의 C에 대한 미수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0. 5. 19.자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2020. 4. 6. 발행되었다.

2) 원고는 2020. 6. 15.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이 사건 배터리를 포함한 ESS 배터리 8,218kWh를 합계 20억 9,55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배터리는 L 태양광발전소 및 M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1, 12, 14호증, 을 제1,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배터리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약정기한인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배터리에 관한 공급대금 합계 1,335,114,000원(= 이 사건 제1 배터리 423,423,000원 + 이 사건 제2 배터리 911,6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상 공급장소인 'F 태양광발전소'와 'H 태양광발전소'(이하 합쳐서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에 이 사건 배터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이전에 C의 보관창고에 이 사건 배터리와 동종의 배터리 재고를 운송하여 적재해 놓기는 하였지만, 그중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물품이 납품되거나 특정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를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공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배터리를 이 사건 발전소에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른 태양광발전소에 납품하기 위해 반품을 진행하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발전소 납품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배터리를 반출하여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의 기망 또는 원고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해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계약을 취소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배터리 공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터리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ESS 배터리의 공급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 C → 유통업체 → 제조업체'의 단계적 발주를 거쳐 이루어지고, 최종 수요자인 태양광발전소 사업자가 요구하는 품명과 규격, 수량에 맞는 ESS 배터리가 제작·공급된다. C는 ESS 배터리의 보관에 적절한 환경을 갖춘 창고를 운영하며 유통업체로써 공급받은 ESS 배터리를 창고에 보관하다가 태양광발전소에 설치·시공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에 따라 통상적으로 태양광발전소에 설치·시공을 완료한 후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공사대금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물품공급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2) 이 사건 배터리는 당초 이 사건 발전소 사업자의 발주에 따라 원고가 C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C의 창고로 납품한 것인데, 이 사건 발전소의 기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배터리가 예정된 일정대로 설치·시공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배터리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C로부터 반품 처리한 뒤, 당시 또 다른 ESS 배터리 유통업체로서 매출 증대가 절실한 상황에 있던 피고와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배터리는 여전히 C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피고 소속 직원(신재생에너지 사업부 책임매니저)으로서 피고의 전주 사무소에 파견되어 이 사건 배터리의 보관창고가 위치한 C의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ESS 배터리의 수령·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N은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배터리에 관한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서'라고 한다)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비록 이 사건 거래명세서에 '이 사건 배터리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하거나, 별도로 '인수확인서', '인수증'과 같은 형식의 문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지만, 거래명세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향후 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점, N의 피고 내 직위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면, N은 거래물품인 이 사건 배터리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거래명세서의 기능과 중요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개별계약서(갑 제2호증의 2, 3)에 '공급장소'로 이 사건 발전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발전소에 공급(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그 소속 직원 N을 통해,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ESS 배터리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에 최종적으로 설치·시공될 예정인 이 사건 배터리가 C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과, 이 사건 발전소의 기공 지연으로 인해 C로부터 ESS 배터리 공급대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게 된 원고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배터리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매출

증대가 필요하였던 피고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향후 이 사건 발전소에 공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배터리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1 계약서는 이 사건 제1 계약이 체결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된 2019. 12. 말경으로부터 약 한 달 반이 지난 2020. 2. 중순경에서야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데다가, 작성일자를 비롯하여 계약서의 모든 내용 또한 피고에 의해 단독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제1 계약서에 날인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개별계약서상 '공급장소'란에 이 사건 발전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 현장에서 이 사건 배터리를 공급(납품)하는 현실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건 배터리의 최후 수요처로서 최종적으로 설치·시공될 장소를 기재함으로써 공급대상 물건을 특정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공급방식이 '이 사건 발전소에 현실적으로 납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C에 공급(납품)하였던 이 사건 배터리를 반품 처리한 다음 피고와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즉, 원고는 빠른 시일 내에 C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당초 C에 공급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배터리를 피고에게 공급함으로써 판매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인데, 이 사건 배터리가 이 사건 발전소에 납품되어야만 비로소 공급이 완료되어 피고로부터 공급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제1 계약의 체결은 기존의 C와의 공급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될 뿐이다.

6) 나아가 피고는 'ESS 배터리 공급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인수 및 검수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 계약은 '현금 유동성 확보'와 '매출 증대'라는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급속하게 진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공급물품인 이 사건 배터리가 C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통상적인 인수 및 검수절차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수 및 검수절차의 미실시를 이유로 이 사건 배터리에 관한 공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의 취소 항변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터리가 이 사건 발전소에 납품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기망하였다거나 피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N의 사실확인서)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는 매출 증대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배터리가 이 사건 발전소 등 태양광발전소에 정상적으로 설치·시공되지 못함으로써 C로부터 물품공급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 계약의 취소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터리의 공급대금 합계 1,335,114,000원(= 이 사건 제1 배터리 423,423,000원 + 이 사건 제2 배터리 911,6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내)6)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3.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가) 만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배터리 공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는 C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배터리를 C에 공급한 것이 되어 C에 대하여 1,383,316,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게 되고, 그 외에도 C에 대하여 별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권 1,103,432,000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배터리를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제2 계약은 C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계약은 1,335,114,000원(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수익자인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이 사건 배터리를 처분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서 1,335,1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가) C는 원고와의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설령 C의 무자력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C의 재정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시중가격에 이 사건 배터리를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제2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더라도, 이 사건 배터리는 종류물이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배터리를 C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9. 11. 27.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피고가 C에 대하여 1,383,316,000원의 공급대금채권을 갖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을 제2, 3,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하여 2019. 10. 30.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채권 약 10~11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7) 위 각 공급대금채권은 이 사건 제2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의 무자력 상태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는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 당시(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20. 5. 19.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인 2020. 4. 6.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의 2019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9.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2,153,155,092원(= 자산총계 26,066,421,720원 - 부채총계 23,913,266,628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C의 2019년 재무제표

내용만으로 당연히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C는 2020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였는데,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그동안 C가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한 내역과 실제 자산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어, 누적된 차입금이나 증빙되지 않은 손실 등으로 인한 차액 약 57억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피고의 2023. 1. 30.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수사결과통지서 참조). 따라서 C는 그 재무제표 기재와 달리 2019년 말에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C의 2019년 재무제표 기재가 실제 재산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동자산 중 외상매출금채권(5,445,765,990원)의 경우, 거래처, 종류,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채권의 존부나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하여 그 전부를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C의 2020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C는 2020.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938,659,666원(= 자산총계 15,764,544,081원 - 부채총계 16,703,203,747원)이 되고, 미처리결손금이 1,788,659,666원에 이르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9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C가 이 사건 제2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배터리를 총 1,481,671,301원에 공급하고 그 대금은 기존에 원고가 C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미수채권과 상계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계약과 관련된 원고와 C 사이의 매출매입 신고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계약은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채권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터리를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제2 계약이 C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는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계약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역시 C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은 29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②

원고는 C와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신용정보회사에 C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까지 C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 계약은 원고가 취득한 이익(1,481,671,301원)과 피보전채권(약 24억 원) 중 적은 금액 가운데 피고가 구하는 1,335,11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배터리가 특정물인지 여부

거래 목적물의 특정성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약정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되므로, 그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 목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관념상 종류물로서 대체성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특정물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ESS 배터리는 최종 소비자인 태양광발전소 측에서 요구하는 품명과 규격, 수량 등에 맞게 제작되어 납품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발주자가 아닌 다른 태양광발전소에 납품되어 설치·시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배터리가 종류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K와 ESS 배터리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부족하자, K가 요구하는 물량을 급하게 확보하기 위해 E에 신규 발주를 하는 대신 C로부터 이 사건 배터리를 매수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한 금액보다도 높은 가격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이 사건 제2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동기, 매매금액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C는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시장에서 유통되는 동종의 ESS 배터리가 아니라 'E로부터 원고, 피고, C에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C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ESS 배터리'를 공급대상으로 특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2 계약에서 이 사건 배터리는 '특정물'로서 거래되었다.

나) 원고의 가액배상의무

원고가 이 사건 제2 계약을 통해 매수한 이 사건 배터리를 K에 공급함으로써 그 배터리가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터리를 원물로 반환하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35,1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현석

판사오주훈

판사성창희

별지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20. 3.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을 고려하면 '2020. 3. 29.'의 오기로 보인다.

2) 반소장, 2022.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고려하여,

예비적 반소로 선행한다.

3) 계약서(갑 제11호증의 3)에는 '1,370kWh'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1,369kWh'인 것으로 보인다.

4) 'Battery Control Panel'의 약자로, 배터리 시스템을 연결하는 패널을 의미한다.

5) 'C'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6)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9. 12. 26.부터 90일 후는 2020. 3. 25.이다.

7)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C 사이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5529), 세부적인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